

2024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3. 5.

이 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모집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후 공지하며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립인동대학교

ANDONG NATIONAL UNIVERSITY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사항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전형유형		법령상 지원자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입학 시기	입학 유형	모집인원 (정원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국외근무자 자녀	제2호	3월	신입학	입학정원 2% 이내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제7호			
	북한이탈주민	제6호			
순수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제7호	3월	신입학 편입학	입학정원 제한없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6호	3월, 9월		

□ 전형일정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구	분	1학기(3월 입학)	비고
원	서	2023. 9. 11.(월) ~ 9. 15.(금)	
면	일	2023. 10. 11.(수)	공연예술음악·미술·체육
	실	2023. 10. 14.(토)	
합	격	2023. 11. 24.(금)	
예	치	2023. 11. 27.(월) ~ 12. 1.(금)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구	분	1학기(3월 입학)	2학기(9월 입학)
원	서	2023. 11. 13.(월) ~ 11. 24.(금)	2024. 5. 6.(월) ~ 5. 17.(금)
면	1	2023. 12. 6.(수)	2024. 5. 29.(수)
	2	2023. 12. 13.(수)	2024. 6. 5.(수)
합	격	2024. 1. 12.(금)	2024. 7. 12.(금)
예	치	2024. 1. 15.(월) ~ 1. 19.(금)	2024. 7. 15.(월) ~ 7. 19.(금)

차 례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II. 전형일정	3
III.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4
IV. 전형방법 및 선발방법	8
V. 제출서류	11
VI. 원서접수	14
VII. 지원자 유의사항	15
[붙임] 기타 안내사항	16
[서식] 지원양식	19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정원의외		
			입학정원 2%이내 국외근무자 자녀 (모집단위별 최대인원)	정원제한 없음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순수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외국인 · 부모가 모두 외국인)
인문 예술 대학	국어국문학과	19	1	약간명	약간명
	중국어문·문화학과	16	1	"	"
	한자문화콘텐츠학과	12	1	"	"
	문화유산학과	15	1	"	"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19	1	"	"
	사학과	27	2	"	"
	공연예술음악과	12	1		
	(성 악)	-	-	"	"
	(피 아 노)	-	-	"	"
	(관 현 악)	-	-	"	"
	(작 곡)	-	-	"	"
	(실용음악)	-	-	"	"
	미술학과	18	1		
	(한 국 화)	-	-	"	"
(서 양 화)	-	-	"	"	
(입체조형)	-	-	"	"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과	17	1	"	"
	무역학과	17	1	"	"
	경영회계 학부	52	5	"	"
	경영학전공 회계세무전공				
	법학과	24	2	"	"
	행정학과	27	2	"	"
	문화관광학과	14	1		
데이터과학과	16	1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15	-	-	-
	윤리교육과	15	-	-	-
	영어교육과	22	-	-	-
	교육공학과	18	-	-	-
	수학교육과	19	-	-	-
	컴퓨터교육과	26	-	-	-
	전기전자교육과	26	-	-	-
	기계교육과	26	-	-	-
생명 과학	생명과학과	27	2	"	"
	백신생명공학과	28	2	"	"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정원외			
			입학정원 2%이내	정원제한 없음		
			국외근무자 자녀 (모집단위별 최대인원)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순수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외국인 · 부모가 모두 외국인)	
건강 복지 대학	스마트원예과학과	27	2	''	''	
	산림과학과	27	2	''	''	
	식물 의학과	28	2	''	''	
	식품생명공학과	31	3	''	''	
	간호학과	74	-	-	-	
	식품영양학과	27	2	''	''	
	아동·사회 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55	5	''	''
		아동학전공				
		통합				
	체육학과	40	4	''	''	
	패션라이프스타일학과	27	2	''	''	
지구환경과학과	12	1				
공과 대학	전기·신소재 공학부	전기에너지공학	28	2	''	''
		신소재에너지공학				
	반도체신소재공학과	20	2	''	''	
	기계공학과	24	2	''	''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40	4	''	''	
	로봇공학과	19	1	''	''	
	전자공학과	29	2	''	''	
	디지털ICT공학과	18	1	''	''	
	컴퓨터공학과	28	2	''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29	2	''	''	
	건설시스템공학과	24	2	''	''	
	환경공학과	19	1	''	''	
	건축공학과	23	2	''	''	
	스마트센서공학과	20	2	''	''	
	화학생명공학과	18	1			
자유전공학부	65	6	약간명	약간명		
성인학습자학부	30	-	-	-		
입학정원		1,309	26	모집인원 제한없음	모집인원 제한없음	

※ 사범대학 및 간호학과, 성인학습자학부 제외

※ 국외근무자 자녀 전형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1,309명)의 2%(26명)이내 범위에서,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최대 10% 이내로 선발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 순수 외국인 등은 정원에 관계없이 선발

II. 전형일정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전 교육 과정 이수 외국인

구	분	1학기(3월 입학)	비고
원	서	2023. 9. 11.(월) ~ 9. 15.(금)	접수처: 대외협력실
지	원	2023. 9. 27.(수)	개별 통보
면	일	2023. 10. 11.(수)	개별 통보
	실	2023. 10. 14.(토)	공연예술음악과·미술학과·체육학과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합	격	2023. 11. 24.(금)	개별 통보
예	치	2023. 11. 27.(월) ~ 12. 1.(금)	본교 지정은행
등	록	2024. 2. 7.(수) ~ 2. 13.(화)	본교 지정은행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구	분	1학기(3월 입학)	2학기(9월 입학)	비고
원	서	2023. 11. 13.(월) ~ 11. 24.(금)	2024. 5. 6.(월) ~ 5. 17.(금)	접수처: 대외협력실
지	원	2023. 11. 30.(목)	2024. 5. 27.(월)	개별 통보
면	1	2023. 12. 6.(수)	2024. 5. 29.(수)	
	2	2023. 12. 13.(수)	2024. 6. 5.(수)	1지망 불합격자 대상
합	격	2024. 1. 12.(금)	2024. 7. 12.(금)	개별 통보
예	치	2024. 1. 15.(월) ~ 1. 19.(금)	2024. 7. 15.(월) ~ 7. 19.(금)	본교 지정은행
등	록	2024. 2. 7.(수) ~ 2. 13.(화)	2024. 8. 19.(월) ~ 8. 23.(금)	본교 지정은행

Ⅲ.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1. 지원대상: 우리나라 초·중·고 전 교육 과정(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2. 지원자격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아래 자격요건 및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모집정원	지원대상	자격요건
입학정원 2% 이내	국외근무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 재학한 자 • 국외근무자(국외근무/사업/영업)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입정원 제한없음	전 교육과정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2024. 2. 29.까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세부 인정 기준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국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으로 통산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합니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합니다.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 국외근무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12년 미만의 학년제의 경우 통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학력 및 재학기간 인정 기준**

-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 졸업자격 인정기준 시점은 2024년 2월 29일입니다.
 -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개간을 인정합니다.
- **전체 이수 학기**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중복학기 인정 기준**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복 관련 지원자격 총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외국학교 인정 기준**

- 부모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 부모의 근무지 국가가 적성 또는 위험 국가인 경우에도 제3국 소재 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 교육과정의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 국내 소재 교육부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는 해외고가 아닌 국내고 이수로 간주합니다.

■ **기타**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국내 국적법(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지침, 본교 신입학 전형 시행계획,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입학 후 제반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릅니다.

2. 지원자격

• 순수 외국인 •

▣ 아래 자격기준 중 국적요건, 학력요건, 어학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국적 요건(공통)		한국과 이중 국적자인 경우 지원 불가, 국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어학요건(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두 항 중 한 가지 이상 필수 충족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3급 이상 성적 취득자 2) 본교 한국어학당 3급 이상 수료자 (타대학 부설 한국어학당의 경우 동등 이상 수료자) ※ 입학장학금(등록금액의 22%)은 TOPIK 성적 소지자만 해당 	
학 요 력 건	전 교 육 과 이 외 국 인	신 입 학	•본인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예정)한 자
		편 입 학	•신입학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두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외 소재 4년제 정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 또는 졸업(학사 학위 취득)한 자 2) 국외 소재 2,3년제 전문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예정)한 자
	부 모 가 모 두 외 국 인 인 외 국 인	국적 요건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 국적을 소지한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신 입 학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편 입 학	•신입학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두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내외 소재 4년제 정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 또는 졸업(학사 학위 취득)한 자 2) 국내외 소재 2,3년제 전문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예정)한 자

※ 순수 외국인 전형 입학자(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는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예체능 계열은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IV. 전형방법 및 선발방법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①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지원자격 서류심사	구술면접	실기고사	합계
일반학과	합/불	100	-	100
공연예술음악과		20	80	100
미술학과		20	80	100
체육학과		40	60	100

※ 심사 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정함

② 구술 면접고사 평가방법

평가항목	반영 비율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방법
인성	30%	공동체의식	• 사회문제 및 현상 등 사회적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관 2명 이상이 각 문항에 대하여 구술문답식으로 평가함. - 면접관: 해당학과(부) 학과장 및 교수 총 2명 이상 • 제출서류에 기반하여 구술식으로 평가함. • 개별 또는 그룹 면접 가능, 개인당 10분 내외 실시함. • 점수반영은 면접관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반영함.
		공감능력	•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	
성장잠재력	70%	전공적합성	• 관심분야에 대한 소질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경험 및 성취 수준	
		논리적 사고력	•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탐구능력	• 관심분야에 대한 주도적인 탐색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능력	

※ 면접고사에 미응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③ 실기고사 평가방법

모집단위	세부 전공	출제형식	반영 점수	비 고
공연예술 음악과	성 악	· 이태리 가곡 중 자유곡 1곡 · 독일 가곡 중 자유곡 1곡	400점 400점	· 반주자 동반 · 암보 연주
	피아노	· Beethoven Sonata 중 빠른 한 악장 (Sonata형식은 재현부 앞까지 반복 없이) · Chopin Etude Op.10, Op.25 중 1곡	450점 350점	· 암보 연주
	관현악	· 자유곡 1곡	800점	· 반주자 동반 · 암보 연주
	작 곡	·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 형식의 무반주 플루트곡 작곡	800점	· 고사시간 : 120분(2시간)

모집단위	세부 전공	출제형식	반영 점수	비 고
	실용음악	[아래 2가지 중 수험생이 택 1] · 연주: 실용음악 장르 중 자유곡 1곡 (모든 악기 가능, 보컬의 경우 모든 파트, 음색 가능) · 작곡: 악보에 기재된 1~2마디의 선율을 발전시켜 실용음악 장르 중 자유곡 1곡, 가사 불필요 (결과물로 수기악보 또는 컴퓨터작업 후 wav파일 제출)	800점	· 보컬 연주: 반주자 동반 또는 MR 준비 · 작곡 고사시간 : 180분(3시간)
미술학과	동양화	[아래 5가지 중 수험생이 택 1] · 석고 소묘 : 아그립파 석고상	800점	· 고사시간 : 240분(4시간) · 쉐트지 : 3절 · 화선지 : 반절
	서양화	· 정물 소묘, 정물 수묵담채화, 정물 수채화 : 광목천, 붉은 벽돌, 사과, 대파, 배추, 맥주병 (이상 6종)		
	입체조형	· 인물두상 소조(당일 출제)		
체육학과		· 메디신볼(Medicine ball) 서서 던지기 · 제자리 멀리뛰기 · 실내 Z자 달리기	200점 200점 200점	· 메디신볼(3kg, 남녀동일)

※ 실기고사에 미응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체육학과 : 실기고사 종목별 미응시자 및 실격자는 해당 종목 점수를 “0점”처리함

2. 순수 외국인

①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지원자격 서류심사	구술면접	실기고사	합계
전 학과	합/불	100	-	100

※ 심사 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정함

② 구술 면접고사 평가방법

평가항목	반영 비율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방법
인성	30%	공동체의식	· 사회문제 및 현상 등 사회적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 면접관 2명 이상이 각 문항에 대하여 구술문답식으로 평가함. - 면접관: 해당학과(부) 학과장 및 교수 총 2명 이상 · 제출서류에 기반하여 구술식으로 평가함.
		공감능력	·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	
성장잠재력	70%	전공적합성	· 관심분야에 대한 소질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경험 및 성취 수준	· 개별 또는 그룹 면접 가능, 개인당 10분 내외 실시함. · 점수반영은 면접관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반영함.
		논리적 사고력	·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탐구능력	· 관심분야에 대한 주도적인 탐색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능력	

※ 면접고사에 미응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1지망 학과 구술면접 불합격자는 2지망 학과 구술면접을 실시함(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지원자에 한함)

3. 합격자 선발(사정) 기준

① 공통사항 (Ⅰ~Ⅳ)

- 가. 지원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의거 산출된 성적을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함.
- 나. 특별자격기준 미달자는 불합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자격기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다. 공연예술음악과, 미술학과 지원자 중 실기고사 반영점수 대비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 라.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마. 전형요소별 성적산출 시 계산과정의 모든 값은 무한대로 산출하여 합산하고, 최종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함.
- 바. 지원자격 기준 미달자, 서류심사 부적격자, 해당 전형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자, 각종 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사.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아. 입학전형 성적이 모집인원 내에 들더라도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은 합격자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② 동점자 처리원칙(Ⅰ)

- 가. 적용 전형 :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2% 이내)
- 나. 선발 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일반학과 1순위 : 구술면접 제2영역 합산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자(연소자)
 - 예체능학과 1순위 : 실기고사 성적이 높은 자
2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자(연소자)
- 다. 선발 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연소자 우선순위

V. 제출서류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① 입학지원서	· [서식1] 또는 [서식2]
	② 수학기간 기록표	· [서식3]
	③ 보호자 국외 체류기간 기록표	· [서식4]
	④ 외국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 학기시작일/종료일 명시
	⑤ 학력조회동의서	· [서식5]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6]
국외 근무자 자녀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②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 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⑥ 사실증명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부모, 학생)	· [서식7]
	⑦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⑧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⑨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국외편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⑩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현지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⑪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⑫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⑬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	· [서식8] / 해당자에 한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②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대학(교) 재학/졸업(예정)증명서 (수료, 수료예정, 졸업, 졸업예정)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편입학) 해당
	⑤ 대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편입학) 해당
	⑥ 출입국사실증명서	
	⑦ 사실증명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학생)	· [서식7]
	⑧ 신분증 사본	
	⑨ 국적취득사실증명서(또는 귀화허가 통지서)	· 결혼이주민 해당
	⑩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주민 해당
	⑪ 언어능력 입증서류(둘 중 한 가지 이상 필수 제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한국어연수기관의 과정수료(또는 재학) 및 성적증명서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해당
	⑫ 재정능력 입증서류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해당
	⑬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 [서식8] / 해당자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①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시·군·구청 발행)	
	②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③ 학력인정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을 인정한 것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다만,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학력인정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V. 제출서류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제출서류	신입	편입	비고
① 입학지원서	○	○	· [서식2]
② 학력조회동의서	○	○	· [서식5]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서식6]
④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학력확인서류* > · 중국: 번역공증본 및 중국교육부 등 발행 인증보고서 제출 · 중국 외: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받은 공증 서류 제출 · 대학 성적: 과목당 학점 및 백분위 성적 표기
⑤ 고등학교 전 과정(3년) 성적증명서	○	○	
⑥ 대학(교) 재학/졸업(예정)증명서 (수료, 수료예정, 졸업, 졸업예정)	×	○	
⑦ 대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	
⑧ 언어능력 입증서류	○	○	· 둘 중 한 가지 이상 필수 제출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2) 한국 내 한국어연수기관의 과정수료(또는 재학) 및 성적증명서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	○	
⑩ 외국국적 증명서류	○	○	· 부모, 학생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⑪ 재정능력 입증서류***	○	○	

- ※ 원본대조가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동시에 제출하여 확인을 필해야함.
-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 번역물을 첨부하여야 함.
- ※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학력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 서류
-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 ① 학력인증 : 중국 전국 고등교육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교육부 학력인증센터, <http://www.chsi.com.cn>)에 신청
 - ② 학위인증 : 중국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중심(교육부 학위인증센터, www.cdgdc.edu.cn)에 신청
 - ③ 한국 내의 공식 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 <http://www.cis.or.kr>)를 통해 신청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지원자 및 부모의 국적 및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머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올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크, 우크라이나, 태국 : 출생증명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제출대상 : 구술면접 통과자
- 제출시기 : 면접결과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
- 제출서류 : 다음 ①, ②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재정능력 : 본인일 경우
 -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USD 18,000 상당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잔고증명서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② 재정능력 : 부모일 경우
 - **부모 명의로** 된 USD 18,000 상당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잔고증명서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부모의 재직 및 수입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 ※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가능, 부모가 있는 경우 타인 명의 서류 제출 제한

VI. 원서접수

1. 원서접수 일정

가. 접수기간: 각 전형별 접수일정에 따름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 입학원서는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편 송부하고자 할 경우는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각 전형별 마감일 17:00까지** 우리 대학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주 소 :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대외협력실

전 화 : 054-820-7102

팩 스 : 054-820-7108

홈페이지 : (대학) <http://www.andong.ac.kr/>

(모집요강) <http://ipsi.andong.ac.kr/>

E-mail : anukorea@anu.ac.kr

영문 주소

Andong National University, 1375, Gyeongdong-ro, Andong-si,
Gyeongsangbuk-do, Korea(36729)

2. 전형료

가. 전 형 료: 60,000원

나.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0-125620

다. 예 금 주: 안동대학교

- ※ 지정 계좌로 원서접수기간 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은행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3.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료,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은 각 전형별 마감일 17:00까지이며, 제출서류가 접수처로 접수되어야 하며 전형료를 납부 완료하여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다. 우리대학 내 복수지원을 할 수 없으며, 단 입시 일정이 다른 타 대학교에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본 대조필 후 반환)

Ⅶ. 지원자 유의사항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학생의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원횟수 제한대상 전형: 제2호 재외국민과 외국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단, 제6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횟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합격한 자는 9월 입학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해당)

1. **접수된 입학 원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지원 학과 및 전공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를 선택한 후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교 내의 모집 단위 간 복수 지원 금지)
2.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형료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구술면접(실기)고사에 응시가 불가함을 사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해 면접고사에 단순 결시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천재지변, 수험생의 질병, 전형 일자 사후 변경의 사유로 미응시 등이 환불 해당
3. 전형 기간 중 모든 공지 사항은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단, 합격자발표는 개별연락)
4. 고사 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필기구를 지참해야 합니다. 고사장에서 휴대폰 및 통신기기·녹음기·카메라 등은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고사 중에 휴대폰 및 통신기기·녹음기·카메라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5. 최종 합격자는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6. 구비 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모집요강에서의 요구 사항 불이행, 주소의 불명,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등), 입국 수속 절차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취소 등)은 지원자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7. 전형 서류의 위조·변조·번역 오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재학 및 재적 중에 확인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졸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적을 말소하며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합니다.
8. **졸업 예정자 등 조건부 지원자격 충족자는 합격 후 개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자격관련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9.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 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등록금 및 신입생 장학금

(기준 : 2023년) (단위 : 학기, 원)

계열	입학금	수업료	장학금	비고(학과명)
인문·사회	-	1,596,600	351,200	국어·영어·수학·과학·역사·사회·인문학·문화·예술·체육·음악·미술·보건·복지·환경·정보·컴퓨터·공학·의생명·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부(인문사회)
이학·체육	-	1,916,500	421,600	화학·물리·지구과학·생명과학·공학·의생명·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부(이학·체육)
공학·미술	-	2,062,700	453,700	미술학과
공학 (공과대학 전학과)	-	2,093,600	460,500	전기·신재생·소부장·공학부(공학 전학과)
음악	-	2,269,700	499,300	공연예술학과

※ 신입생 장학금은 순수 외국인 전형 합격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소지자만 해당

- 등록금(예납금) 납부 등에 대한 안내문은 합격자 발표 이후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E-mail 주소로 별도 안내합니다.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기간 내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생활관비(2023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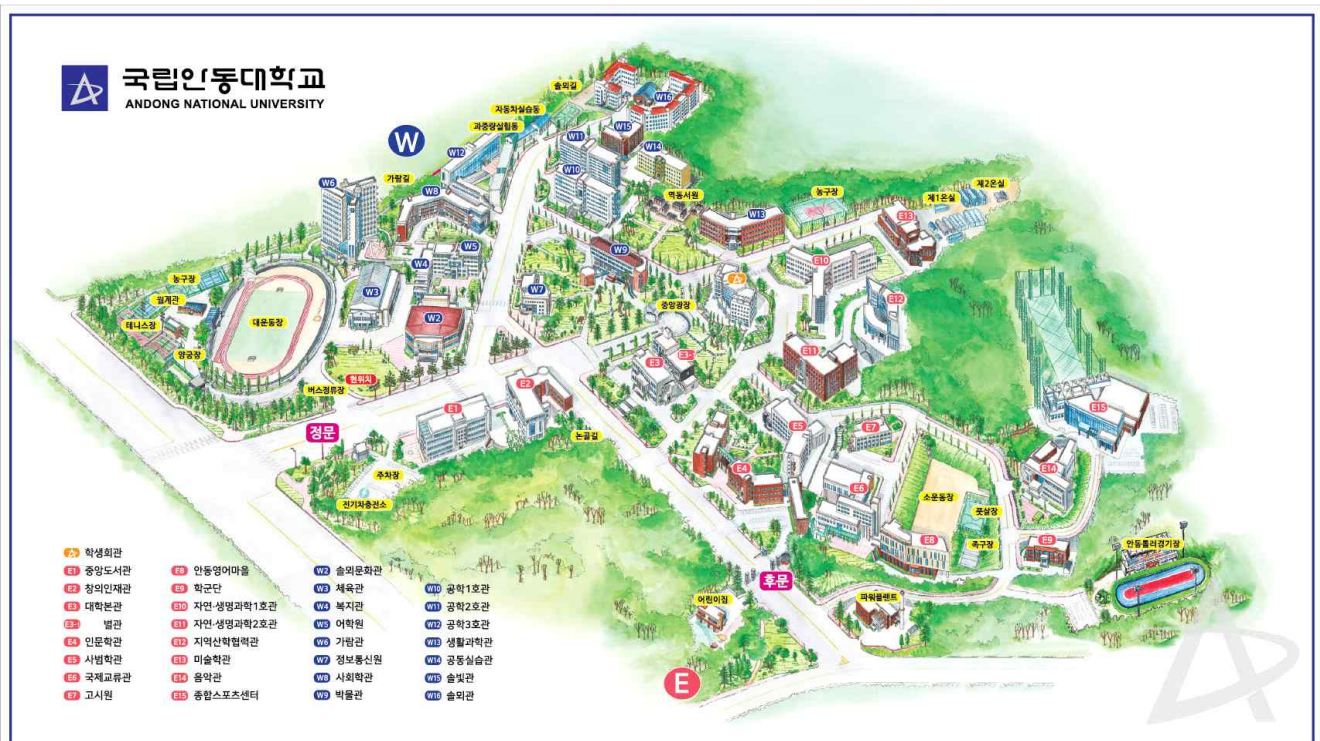
(기준 : 2023년) (단위 : 학기, 원)

구분	생활현	관리비	식비	합계	비고
솔외관 1동	남	2인 766,000 (학기중)	540,000 (학기중)	1,306,000	16주
가람관	여	2인 915,000 (학기중)	540,000 (학기중)	1,455,000	〃
솔빛관	남·여	2인 1,205,000 (방학포함)	540,000 (학기중)	1,745,000	25주

부서 및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대외협력실		054-820-7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입학 외국인 장학금 외국인 생활관 입사 안내
교육혁신과		054-820-7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적(휴·복학, 제적) 관리
		054-820-7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수강신청
		054-820-7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결 성적 관리 제·증명(전자민원) 발급
재무과		054-820-7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금 수납, 환불 안내
학생지원과		054-820-7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금, 학자금 대출 안내
취업창업지원과		054-820-70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상담
		054-820-6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상담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도서관		054-820-72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반납, 회원제, 열람실
생활관	솔미관	054-820-74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관 관리
	가람관	054-820-7443	
	솔빛관	054-820-7452	
단과대학 행정실	제1행정실	054-820-76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예술대학
		054-820-77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제2행정실	054-820-77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과학대학
		054-820-7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054-820-6822

안동대학교 캠퍼스 안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방법

- 아포스티유 협약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기준: 2023. 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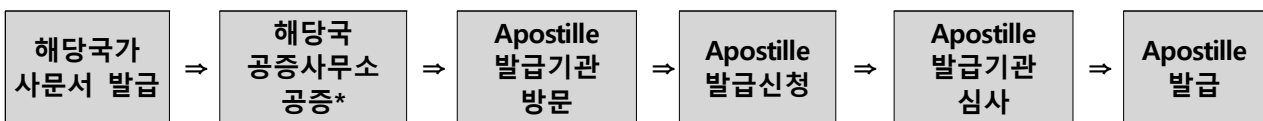
지역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중동·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파키스탄

■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가.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나. 사문서* (사립대 등)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서식1]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서식2] (순수 외국인)



수학기간 기록표

성명 :	지원학과(부) :	지원 자격 구분 :
------	-----------	------------

◎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 (초등학교부터 연도별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학교소재지		수 학 기 간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국가명	도시명	기 간	재학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	2	1	2	1	2	1	2	1	2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 학교 재학기간												

특이사항 :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국외 체류기간 기록표

성명 :	지원학과(부) :	지원 자격 구분 :
------	-----------	------------

◎ 보호자 국외 근무기간 기재(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부모가 국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재)

구 분	소재지		국외 근무(체류) 기간		- 보호자의 국외 체류기간과 학생의 체류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표시 -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보호자의 국외 체류기간 종료시는 ▲표시										
	국가명	도시명	기 간	근무(체류)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2	1	2	1	2	1	2	1		
부(父) 성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모(母) 성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학력조회동의서 Agreement for degree verification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수험번호
-----------------	------

지원자 정보 Applicant Information

성 명 (한글/영문) Name of Applicant	
지원학과(부) / 전공 Department / Major	

출신학교 정보 Academic Information

학교명 Name of Institution Graduated	
학교주소 Address of Institution Graduated	
학위종류 Name of Degree	
이수전공 Major	
입학일자 Date of admission	_____년 (yyyy) / _____월 (mm) / _____일 (dd)
졸업(예정)일자 Date of (Expected) Graduation	_____년 (yyyy) / _____월 (mm) / _____일 (dd)
재학기간 및 등록학기 Period of Attendance	재학기간: _____년 _____월 ~ _____년 _____월, 총 ()학기 이수 (Year/MM) ~ (Year/MM), Total () semesters completed
홈페이지 주소 Website of Institution Graduated	

학력조회 요청 학교 정보 Institution Information to Request RELEASE OF ACADEMIC INFORMATION

학력조회 담당부서 Office in Charge	
학력조회 담당자 성명 Name of Staff in Charge	
담당자 연락처/팩스번호 Phone/Fax No. of Staff in Charge	
담당자 E-mail E-mail of Staff in Charge	

이 양식에 서명함에 따라 본인이 이수한 학력/학위에 대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안동대학교에 권한을 부여하며, 학력조회에 동의합니다.

By signing this form, I am giving authorization to Andong National University to verify my degree/enrollment records.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학력조회 의뢰 용도로만 사용되고 엄중히 관리됩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be kept strictly confidential and wi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degree verific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20 년 월 일
(Year / MM / DD)

지원자 서명 _____ (Signature of applicant)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부재중 연락 전화번호 친인척 등), 이메일, 학력정보[졸업/졸업예정 학교명, 입학 년월일, 졸업(예정) 년월일, 수업 연한, 최종 학력구분(졸업/졸업예정 등), 졸업/졸업예정 학교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주소,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원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지원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나이, 직업), 어학능력(한국어 및 영어), 환불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모집단위(지원 학부/학과), 보호자 국외 체류기간 기록표[부, 모 공통: 거주(체류) 기간]/부모의 국외근무(영 주) 정보[직업, 직장명, 근무(영주) 국가명, 근무(영주) 기간/외국 영주권 취득기록(지원자, 부, 모 공통: 국적, 국가명, 영주권 번호, 취득일)], 수학기간 기록표(기록 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대입 원서 접수, 대입 전형, 학사업무를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p>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보호자(부, 모)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p>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대입 원서 접수, 대입 전형, 학사업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p>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보호자(부, 모)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개인정보 제3차 제공에 대한 동의>

-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성명,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p>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제3차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 개인정보의 제3차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p>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전형기간,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함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확인>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①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② 수시모집(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모든 전형에 해당함. 재외국민 전형(모집정원의 2% 정원외 선발),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제외.
 - ③ 수험생이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④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함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안동대학교총장 귀하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부터(from)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and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수험번호		성명	
지원학과(부)		지원자격 구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 증빙자료 :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본 인 : (인)

안동대학교총장 귀하